메는 사용진캠퍼스 매일정리노트(O.X) 민법및민사특별법 2회

채희대 교수

(01/19)

- 1. 의사표시해석에 있어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상대방이 안 경우, 의사표시는 표시행 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의사를 기준으로 하여 해석하여야 한다. ()
- 2. 매도인이 자기소유의 X토지에 대하여 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X토지의 지 번 등에 착오를 일으켜 Y토지에 관하여 매수인명의로 이전등기를 해 주었다면 Y토지 에 관하여 경료된 이전등기는 유효하다. ()
- 3.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내심적 효과의사와 표시상의 효과의사가 불일치하는 상태이므로 그 효력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. ()
- 4.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'진의'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 자의 생각을 말한다. ()
- 5. 전체 공무원이 일괄사표를 제출함에 따라 공무원 甲도 함께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, 甲 의 내심의 의사는 사직할 뜻이 아니었으므로 사직서의 제출은 무효이다. ()
- * 甲은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乙과 짜고 허위로 토지를 양도 하였다(6~8).
- 6. 가장매매는 불법에 해당하므로 甲은 乙에게 그 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. ()
- 7. 乙이 토지를 선의의 丙에게 이전하여 주었으나 丙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. ()
- 8. 위 6에서 선의의 丙이 악의의 丁에게 양도하였다면 丁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. ()
- 9. 착오로 인한 취소는 당사자의 약정으로 배제할 수 없다. ()
- 10.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기 위해서 동기를 의사표시 내용으로 하는 합의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. ()
- 11. 착오로 인한 취소는 표의자의 주관적 이익을 보호하는 제도이므로 표의자의 경제적 불이익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판단에 고려되지 않는다. ()
- 12. 매수인의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매도인이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 은 착오를 이유로 그 계약 전체를 취소할 수 있다. ()
- 13. 중요부분의 착오에 의하여 하자가 있는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, 하자담보책임이 성립 하는 범위에서 착오에 의한 취소는 인정되지 않는다. (

메른♥ 노량진캠퍼스 매일정리노트(O.X) 민법및민사특별법 2회

(01/19)

- 14. 법률행위의 외형만 존재할 정도로 표의자 스스로 의사결정 할 여지를 완전히 박탈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무효이다. (
- 15. 교환계약시에서 시가에 대한 묵비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해당한다. (
- 16. 대리인이 기망을 한 경우에 표의자는 본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. ()
- 17. 소송행위가 강박에 의한 것이라면 이를 취소할 수 있다. ()
- 18. 제3자의 사기로 인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제3자에 대해 손해배 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매매계약을 취소하여야 한다. ()

매일정리노트(O, X) 정답

- 1. (X) 진의를 알았다면 내심상의 효과의사를 기준으로 한다
- 2. (X) 오표시무해의 원칙에 관한 내용으로 X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Y토지의 등기는 무효 이다
- 3. (X) 비진의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이다
- 4. (O)
- 5. (X) 공법행위에는 비진의표시가 적용되지 않고 표시된대로 효력이 발생한다
- 6. (X) 가장매매가 불법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불법원인급여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. 따라서 소유권은 甲에게 있으므로 甲은 乙에게 그 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
- 7. (X) 보호되는 제3자는 선의이면 충분하고 무과실까지 갖출 필요는 없다. 따라서 과실이 있는 제3자라도 선 의라면 권리를 취득한다
- 8. (X) 丙이 선의의 경우, 전득자인 丁은 선악을 불문하고 취득한다
- 9. (X) 착오에 관한 규정은 임의규정으로 당사자가 이를 배제하는 특약을 할 수 있다

빠ᄣ♥ 노량진캠퍼스 매일정리노트(O.X) 민법및민사특별법 2회

(01/19)

- 10. (O)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기 위해서는 동기가 표시되어 법률행위의 내용이 되면 충분하고 당사자 의 합의까지는 필요하지 않다
- 11. (X) 경제적불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중요부분에 해당하지 않는다
- 12. (O) 해제를 당한 매수인은 손해배상 등의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이미 해제된 법률행위라도 착오를 이유 로 취소할 수 있다
- 13. (X)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지와 상관없이 착오를 이 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
- 14. (O) 강박에 의하여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되는 정도는 취소사유이나 의사결정의 자유가 박탈 또는 상실 된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
- 15. (X) 침묵에 의한 기망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고지의무가 있어야 하므로 고지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기망에 해당하지 않는다
- 16. (X) 대리인은 본인과 동일시하는 자이므로 제3자의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. 따라서 본인의 선악과 상관없 이 표의자는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
- 17. (X) 공법행위나 소송행위는 표시하면 유효가 되며 이를 취소할 수 없다
- 18. (X) 취소하지 않고도 불법행위에 위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